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7 차 정 무 위 원 회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 일 반 회 계

2024. 11.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제1장 개 요	1
Ⅰ. 총 괄	1
1.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1
2. 2025년도 재정운용 방향	1
Ⅱ. 세입세출예산안	4
1. 일반회계	4
가. 세입예산안	4
나. 세출예산안	5
(1) 총괄	5
(2) 인건비	6
(3) 기본경비	6
(4) 주요사업비	7
Ⅲ. 성과계획서	13
1. 임무와 비전	13
2. 목표 및 과제 현황	13

IV. 성인지 예산	14
------------------	----

제2장 검토의견	15
----------------	----

I. 일반회계	15
---------------	----

[세입]	15
--------------	----

1. 과태료: 수납가능 범위 내 세입예산 편성 필요 등	15
--------------------------------------	----

[세출]	25
--------------	----

1.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 사업비 성격 예산의 기본경비 편성 시정 및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예산 통합 편성 필요	25
---	----

2.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 철저한 준비 필요	32
--	----

3. 반부패기술지원(ODA): 수원국 다양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39
---	----

4. 고충민원조사활동: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 사업의 사업계획 및 운영 방안 재검토 필요	47
--	----

5.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외부기관 국외여비 지원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	54
--	----

6.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일반용역비 예산 증액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	60
--	----

7. 행정심판운영: 행정심판통합시스템 관련 홍보비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	66
---	----

8. 행정심판운영: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위한 심사강도 완화 및 홍보 강화 필요	71
--	----

제1장 개 요

I. 총 관

1.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재정규모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총지출 규모는 1,054억 3,700백만원으로 2024년도 대비 △5.5% 감소함.

2. 2025년도 재정운용 방향

- 2025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고충처리, 행정심판, 제도 개선 등의 기능 통합을 통해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임.

< 기본 방향 >

- ◇ 현장중심의 국민고충 적극해소로 실질적 권익보호
 - ◇ 불합리한 제도, 관행 및 규제 등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개선
 -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상식 확립으로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
-

□ **국민 고충의 적극적 해결**

-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위법·부당, 소극행정 등에 대한 시정권고·의견표명을 강화하고, 악성민원에 따른 공직사회 불안·행정 비효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
- ONE-STOP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특별행정심판기관 통합 및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통합 추진
- 수요자 중심의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온라인 행정심판 개선 등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정책 개선**

-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
- 협업·개방을 통한 민원데이터 이용 활성화로 민원데이터 기반 정책개선 및 민원해소 지원
- 국민고충·불편해소 및 구조적 부패관행·제도의 근원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반부패·청렴정책 혁신 및 청렴문화 확산**

-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은 청렴선진국 도약의 기틀 마련을 위해 국가청렴도(CPI) 지속 향상 추진

- 각급기관의 청렴수준과 반부패 개선노력을 종합해 청렴도를 평가하고, 반부패정책 협력체계 및 공직자 의무교육 등을 통해 각급기관 청렴역량 강화
- 민-관 협력을 통한 반부패 거버넌스 확립 및 고위직,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확대로 사회전반의 청렴의식 확산
- APEC 반부패 분야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한국의 반부패 성과를 공유하고 국제 반부패 협력사업 확대

□ 선제적 신고자 보호 및 부패현안에 적극 대응

- 신고자 보호·지원 체계 일원화, 보상금 지급기준 개선, 적극적인 보호·보상 사건 처리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 공정채용 상시 관리체계 운영 및 채용규정 컨설팅·전문교육 운영을 통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 공공재정 부정청구 취약분야 실태점검을 통한 공공재정 누수 방지 및 공공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2025년도 전략목표별 자원배분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예산액	비중
□ 전략목표 I :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 권익을 증진한다.	452	100.0
합 계	452	100.0

Ⅱ. 세입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안

-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4년도 예산 대비 25.1% 증가한 11억 1,600만원이 편성됨.
-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는 이행강제금 수입 증가를 예상하여 2024년 대비 12.5% 증가한 1억 8,000만원이고, 기타 경상이전수입은 보상금 지자체 상환액 및 보상금 과오납금 반환액 증가 등으로 2024년 대비 29.9% 증가한 8억 8,600만원이며, 기타잡수입은 청렴연수원 시설사용료 등으로 2024년과 동일한 5,0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892	1,116	224	25.1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160	180	20	12.5
- 과태료	160	180	20	12.5
□ 기타경상이전수입	682	886	204	29.9
- 기타경상이전수입	682	886	204	29.9
□ 잡수입	50	50	-	-
- 기타잡수입	50	50	-	-

나. 세출예산안

(1) 총괄

-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 대비 △5.5% 감소한 1,054억 3,7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111,592	105,437	△6,155	△5.5
- 인건비	48,817	52,132	3,315	6.8
- 기본경비	7,847	8,148	301	3.8
- 주요사업비	54,928	45,157	△9,771	△17.8

※ 총계기준

-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2024년 대비 각각 33억 1,500만원(6.8%), 3억 100만원(3.8%)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97억 7,100만원(△17.8%) 감액 편성되었음.

(2) 인건비

-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인건비 예산안은 2024년 대비 33억 1,500만원 (6.8%) 증가한 521억 3,200만원이 편성됨.

이는 본부 및 소속기관(정부합동민원센터, 청렴연수원) 공무원 등의 인건비임.

<2025년도 인건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48,817	52,132	3,315	6.8
□ 보수(110-01)	48,025	51,339	3,314	6.9
□ 기타직보수(110-02)	410	394	△16	△3.9
□ 연가보상비(110-05)	382	399	17	4.5

(3) 기본경비

-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기관운영 기본경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대비 3억 100만원(3.8%) 증가한 81억 4,8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기본경비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7,847	8,148	301	3.8
□ 인건비(110)	746	1,056	310	41.6
□ 운영비(210)	4,122	4,072	△50	△1.2
□ 여비(220)	591	649	58	9.8
□ 업무추진비(240)	368	403	35	9.5
□ 직무수행경비(250)	1,012	961	△51	△5.0
□ 연구용역비(260)	401	385	△16	△4.0
□ 보전금(310)	114	110	△4	△3.5
□ 민간이전(320)	137	183	46	33.6
□ 건설비(420)	30	35	5	16.7
□ 유형자산(430)	200	285	85	42.5
□ 무형자산(440)	125	10	△115	△92.0

(4) 주요사업비

-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비 예산안은 1개의 프로그램,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예산 대비 97억 7,100만원(△17.8%) 감소한 451억 5,7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주요사업비 단위사업별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주요사업비	54,928	45,157	△9,771	△17.8
○ 청렴권익문화확산	1,796	1,445	△351	△19.5
○ 청렴권익행정정보화	25,791	17,850	△7,941	△30.8
○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1,144	1,343	199	17.4
○ 부패·고충제도개선 및 국민소통활성화	12,002	9,609	△2,393	△19.9
○ 국민고충해소	1,324	1,680	356	26.9
○ 반부패청렴정책강화	11,694	11,687	△7	△0.1
○ 행정심판	1,177	1,543	366	31.1

-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안 내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으며, 67억 8,400만원이 편성됨.
- 단위사업 청렴권익문화확산은 세부사업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 구조조정 및 사업 추진방식 개편에 따라 △19.5% 감액된 14억 4,500만원이 예산안으로 편성됨.

<2025년도 청렴권익문화확산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청렴권익문화확산	1,796	1,445	△351	△19.5
- 청렴권익정책알리기	1,796	1,445	△351	△19.5

- 청렴권익행정정보화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정보시스템, 국민신문고 등 대국민 소통창구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에는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 사업 예산 67억 8,4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으나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1단계 사업 완료로 148억 9,700만원이 감액되어 2024년 대비 △30.8% 감소한 178억 5,0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청렴권익행정정보화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청렴권익행정정보화	25,791	17,850	△7,941	△30.8
- 행정정보시스템운영	22,372	7,700	△14,672	△65.6
- 국민소통시스템구축및운영	3,419	3,366	△53	△1.6
-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	-	6,784	6,784	순증

-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반부패 제도·정책 등을 전수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민간기업과의 협력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 APEC 국제회의 개최가 예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반영되는 등 2024년 대비 17.4% 증가한 13억 4,3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청렴권익대내외협력강화	1,144	1,343	199	17.4
- 반부패기술지원(ODA)	298	298	-	-
- 청렴권익국제교류	391	691	300	76.7
- 청렴권익민간협력	455	354	△101	△22.2

-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사업은 불합리한 법령·제도 등을 발굴하여 개선대책을 마련·권고하는 제도개선 사업과 정부합동민원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상담창구운영 사업 내 정보화예산이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 사업으로 이관되어 2024년 대비 △19.9% 감액된 96억 9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소통활성화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부패·고충제도개선및국민 소통활성화	12,002	9,609	△2,393	△19.9
- 부패·고충제도개선	92	83	△9	△9.8
- 종합상담창구운영	11,910	9,526	△2,384	△20.0

- 국민고충해소 사업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이를 적절히 해소하기 위해 각종 민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안에는 특별(악성)민원 중점관리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2024년 대비 26.9% 증액된 16억 8,0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국민고충해소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국민고충해소	1,324	1,680	356	26.9
- 고충민원조사활동	1,324	1,680	356	26.9

- 반부패청렴정책강화 단위사업은 8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고자 보·포상금 예산 일원화를 위한 사업 통폐합이 있었고, 지출 구조조정 등을 반영하여 2024년 대비 △0.1% 감액된 116억 8,7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반부패청렴정책강화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반부패청렴정책강화	11,694	11,687	△7	△0.1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3,066	2,999	△67	△2.2
-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239	2,428	189	8.4
- 공직자행동강령운영	89	78	△11	△12.4
- 신고자보호보상 및 공익 신고제도운영	4,730	5,500	770	16.3
- 공공재정환수제도운영	991	206	△785	△79.2
- 청탁금지제도운영	244	166	△78	△32.0
-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226	210	△16	△7.1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운영	109	100	△9	△8.2

- 행정심판 단위사업은 행정심판운영 1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확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영상회의 시스템 개선, 중앙행정심판 및 특별행정심판 통합 등을 위한 국정과제 홍보비 등이 증액 반영되며 2024년 대비 31.1% 증액된 15억 4,3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행정심판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 행정심판	1,177	1,543	366	31.1
- 행정심판운영	1,177	1,543	366	31.1

Ⅲ. 성과계획서

1. 임무와 비전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도 임무를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권익을 보호하여 깨끗한 정부,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로 설정하고, ‘청렴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 국민권익을 증진한다.’로 정책 비전을 설정하였음.

2. 목표 및 과제 현황

- 국민권익위원회는 1가지 전략목표(‘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와 1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1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었음.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프로그램 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지표 성격				정량지표수 (비중)
			투입	과정	산출	결과	
1	1	1	-	-	-	1	0 (0.0%)
		100%	-	-	-	100%	

프로그램 목표	성 과 지 표			'25년 목 표 치	지 표 종 류		비 고
	지 표 명	가 중 치	성 과 분 야		정 량/ 정 성	성 격	
전략목표 I. 청렴한 국가 실현, 국민의 고충해결로 국민권익을 증진한다.							
프로그램목표 I-1. 국민권익증진을 위해 반부패·청렴 정책을 강화하고,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친다.							
국민권익 증진	①국가청렴도(CPI)	1.0	일반재정	64.0(점)	정성	결 과	국제평가 지수(TI)

IV. 성인지 예산

- 2025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규범자문단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1개 세부사업이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800만원이 편성됨.

<2025년도 성인지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B-A)/A
합 계	16	8	△8	△50.0
□ 일반회계	16	8	△8	△50.0
○ 청탁금지제도 운영	16	8	△8	△50.0
- 청탁금지제도 운영 지원	16	8	△8	△50.0

제2장 검토의견

I. 일반회계

[세입]

1. 과태료: 수납 가능 범위 내 세입예산 편성 필요 등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과태료’는 부패신고자·공익신고자 및 청탁신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조치에 관한 이행강제금 등을 포함하는 세목으로,¹⁾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00만원 증가(12.5%)한 1억 8,000만원이 편성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6(이행강제금)²⁾,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이행강제금)³⁾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이행강제금)⁴⁾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이나 신분보장

1) 세부사업: 과태료(56-563)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의6(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3)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이행강제금) 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

등조치결정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 2025년 예산안에는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청탁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으로 각각 6,000만원을 계상함.

< 2025년도 과태료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과태료	△ 62	160	180	20	12.5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나. 검토의견

권익위는 징수결정액을 근거로 과태료의 예산액을 매년 증액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평균 수납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징수결정 29건 중 72.4%인 21건이 법원에서 취소결정을 받았는바,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납이 가능한 범위 내의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율을 낮추기 위해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법령 해석에 관한 주의·절차를 강화하여 처분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 권익위는 2020년도부터 과태료의 예산액을 매년 증액하고 있으나, 연도별 이행강제금 예산액,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보면 금액상 괴리가 상당한 정도로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됨.
- 예산액은 2020년 3,000만원에서 2025년 1억 8,0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수납액은 2022년 1억 1,000만원이 최고액이며, 2023년엔 음(-)의 수납이 되는 등 매년 변동폭이 큰 상황임.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예산액 대비 수납률’보다 훨씬 저조한데, 이는 전년도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이 차년도 징수결정액에 포함되는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권익위는 대부분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소송에서 위원회가 패소하거나 소송 패소 취지에 따라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부과 처분을 취소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연도별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B)	이행강제금 수납액(C)	수납율 (C/A)	수납율 (C/B)	미수납액
2020	30	147	37	123.3	25.2	110
2021	60	200	40	66.7	20.0	160
2022	100	260	110	110.0	42.3	150
2023	110	128	△62	△56.4	△48.4	190
2024	160	93	43	26.9		5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0년~2024년 8월말 기준 과태료 수납실적 >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수납율 (B/A)	미수납액
2020년	부과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15	15	97	7	7.2	90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15	15	50	30	60	20
2021년	부과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30	30	180	20	11.1	160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30	30	20	20	100.0	-
2022년	부과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50	50	170	20	11.8	150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50	50	90	90	100.0	-
2023년	부과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40	40	150	-	-	150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40	40	△32	△62	△100.0	30
	청탁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30	30	-	-	-	-
	비위면작자 해임요구 거부 과태료	-	-	10	-	-	10

연도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수납률 (B/A)	미수납액
2024년	부패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50	50	53	13	24.5	40
	공익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60	60	30	30	100.0	-
	청탁신고자 보호위반 이행강제금	50	50	-	-	-	-
	비위면작자 해임요구 거부 과태료	-	-	10	-	-	10

※ 전년도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차년도 징수결정액에 포함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3년의 경우 수납액이 전무한 상황에서 소송 패소로 과오납금반환금이 발생하여 △6,2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23년 과태료수납과 관련하여 아래 표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3건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이미 수납된 6,200만원을 과오납처리하여 반환하게 되었기 때문임.

< 2023년 과태료 관련 소송 현황 >

(단위: 백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사유 (차수)	결정일 (반환일)	반환액	비고
공공기관의 직장내 성추행 신고자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미이행 (1차)	2023-09-01 (2023-09-26)	△20	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2023.9.1.)로 기수납된 이행강제금 반환
공공기관의 직장내 성추행 신고자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미이행 (2차)	2023-09-01 (2023-09-26)	△20	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2023.9.1.)로 기수납된 이행강제금 반환
정보통신망법 위반 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미이행 (1차)	2023-12-18 (2023-12-22)	△2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결정(2023.12.18.)
합계		△62	-

주) 같은 원인행위에 관한 이행강제금은 매년 2회차 이내, 회차당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총 부과횟수에는 제한이 없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2022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세입(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29건 중 ① 수납 5건, ② 승소 3건(대법원 상고 중), ③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가 21건(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 3건 포함)으로, 징수결정 29건 중 72.4%가 취소되었음.

< 2022년~2024년 8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 >

구분	부과일자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1	2020-09-07	30백만원	-	30백만원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6호) 2024.3.4.
2	2020-12-08	-	-	-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2022.9.23.
3	2020-12-28	30백만원	-	30백만원	■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7호) 2024.3.4.
4	2021-02-09	-	-	-	■ 대법원 판결(2022.5.12.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2제2분과170호) 2022.9.19.
5	2021-07-20	-	-	-	■ 대법원 판결(2022.5.12.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2제2분과170호) 2022.9.19.
6	2021-10-12	30백만원	-	30백만원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6호) 2024.3.4.
7	2022-02-28	20백만원	20백만원	-	■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9.1. 선고) 2023.9.26. 반환
8	2022-02-28	30백만원	-	30백만원	■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7호) 2024.3.4.
9	2022-11-29	20백만원	20백만원	-	■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9.1. 선고) 2023.9.26. 반환
10	2022-11-29	-	-	-	■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제외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3.9.1. 선고)로 보호조치결정 취소
11	2020-09-07	30백만원	-	30백만원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6호) 2024.3.4.
12	2020-12-28	30백만원	-	30백만원	■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7호) 2024.3.4.

구분	부과일자	장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13	2021-10-12	30백만원	-	30백만원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6호) 2024.3.4.
14	2022-02-28	30백만원	-	30백만원	■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7호) 2024.3.4.
15	2022-11-29	-	-	-	■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 제외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3.9.1. 선고)로 보호조치결정 취소
16	2023-09-26 (반환일자)	-	△20백만원	-	■ 2022.2.28. 1차 부과하여 2022.6.30. 수납되었던 이행강제금 반환 -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9.1. 선고)
17	2023-09-26 (반환일자)	-	△20백만원	-	■ 2022.11.29. 2차 부과하여 2023.1.13. 수납되었던 이행강제금 반환 -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에서 패소(서울고등법원 판결, 2023.9.1. 선고)
18	2023-12-22 (반환일자)	-	△22백만원	-	■ 2019.7.17. 부과하여 2019.9.29. 수납되었던 이행강제금 반환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위원회 패소 취지 대법원 판결(2023.10.12. 선고)
19	2024-03-04	10백만원	8백만원	-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2020년 1차, 2021년 2차)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6호) 2024.3.4. ■ 위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2024.3.4.) - 자진납부함에 따라 20% 감경 납부 2024.3.22.
20	2024-03-04	5백만원	5백만원	-	■ 대전고등법원 판결(2024.1.11. 선고) 취지에 따라 이행강제금(2020년 1차, 2022년 2차) 부과 처분 취소 결정(2024제2분과47호) 2024.3.4. ■ 위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 2024.3.4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2 제1항 제3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따라 50% 감경 부과 결정 2024.5.13. - 2024.6.17. 수납
21	2024-7-2	10백만원	-	10백만원	■ 서울고등법원 판결(2022.9.1. 선고)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2022.9.23. ■ 위 이행강제금을 취소하는 대신 과태료 부과 결정 2024.6.24. - 부과대상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중 2024.8.22.
22	2022-04-11	20백만원	20백만원	-	■ 2022.7.26. 수납
23	2022-05-20	20백만원	20백만원	-	■ 2022.6.30. 수납
24	2022-07-25	30백만원	30백만원	-	■ 2022.8.31. 수납
25	2023-12-18	30백만원	-	30백만원	■ 2024.1.31. 수납
26	2023-12-18	30백만원	30백만원	-	■ 2024.1.31. 수납

구분	부과 일자	장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비고
27	2022-11-29	30백만원	-	30백만원	■ 2023.1.4.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22.6.29. 본소제기 → 2023.2.17. 재판부 사건 병합 ■ 2023.9.8. 1심 위원회 승소, 원고 항소(2023.9.25.) ■ 2024.6.11. 2심 위원회 승소, 원고 상고(2024.7.8.)
28	2022-11-29	30백만원	-	30백만원	■ 2023.1.4.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22.6.29. 본소제기 → 2023.2.17. 재판부 사건 병합 ■ 2023.9.8. 1심 위원회 승소, 원고 항소(2023.9.25.) ■ 2024.6.11. 2심 위원회 승소, 원고 상고(2024.7.8.)
29	2022-11-29	30백만원	-	30백만원	■ 2023.1.4.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제기 - 2022.6.29. 본소제기 → 2023.2.17. 재판부 사건 병합 ■ 2023.9.8. 1심 위원회 승소, 원고 항소(2023.9.25.) ■ 2024.6.11. 2심 위원회 승소, 원고 상고(2024.7.8.)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율이 높은 상황에 대해, 권익위는 관계법령의 해석과정에서 판단이 어려운 쟁점이 발생할 수 있고, 패소결과만 부각될 경우 신고자 보호를 위한 위원회의 처분 자체가 위축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임.

□ 그러나, 소송이 제기된 24건 중 패소가 21건으로 패소 비율이 너무 높으며, 최근(2024.3.4.) 대법원 최종선고가 내려진 아래 2건의 결과를 보면, 구법에 규정된 원인행위에 대해 신법을 근거로 처분하였다가 패소하는 등 일반적인 수준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충분히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처분이 존재함.

< 최근(2024.3.4.)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취소된 소송 2건의 요지 >

<사례 1: OO고등학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 서울고등법원 판결 (2022.9.1. 선고) 요지>

- 원고들이 구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이 사건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드는 신법 제62조의6의 규정을 원고들에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함.

<사례 2: OO센터 신분보장조치 결정 처분 취소 소송 - 대전고등법원 판결 (2024.1.11.) 요지>

- ‘신분보장등조치결정’에 구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조치요구’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신법 제62조의3에서 정한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이 아닌 구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구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신법 제62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주) 대법원 판결(2024.3.4.)이 위에 인용된 고등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내려졌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이행강제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법규를 집행함에 있어서 신고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긴 하나, 부과 대상자에게는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잘못된 법 집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권익위는 향후 이행강제금 부과 시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법령 해석에 관한 주의·절차를 강화하여 처분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과태료 예산은 징수결정액을 근거로 매년 증액되고 있으나, 징수결정액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에서 취소결정이

내려지는 비율이 절반 이상이므로,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납이 가능한 범위 내의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2025년은 2024년보다 2,000만원 증액된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최근 10년간 최고 수납액은 1억 1,000만원, 최근 5년간 평균 수납액이 3,400만원임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세입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세출]

1.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 사업비 성격 예산의 기본 경비 편성 시정 및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예산 통합 편성 필요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는 국민권익위원회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총액인건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비로,⁵⁾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4,200만원(△3.0%) 감소한 45억
4,5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기관운영경비(비대상)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기관운영 기본경비(비대상)	3,944	4,687	4,545	△142	△3.0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나. 검토의견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에 편성된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예산
을 주요사업비로 편성·집행하고,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비실명 대리신고 관
련 예산을 통합할 필요가 있음.

5) 세부사업: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1111-250)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본인 노출을 꺼리는 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⁶⁾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신고에 도입(2018.10.18.)된 이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신고⁷⁾(2022.6.8.), 부패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⁸⁾(2022.7.5.),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⁹⁾(2024.9.27.)로 확대되어 왔음.

□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 시 변호사 선임 등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를 겪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를 도와주는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에 따

6)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같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아니 된다.

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로 같음한다.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같음한다.

9)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준용규정) 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구등에 대한 신고의 접수·처리, 신고자등의 보호, 포상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3조, 제6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0조, 제70조의2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라 이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하려는 부패행위 신고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에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지급을 위한 일반수용비(210-01) 8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런데,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은 세출 예산을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인건비, 기본경비, 주요사업비로 구분¹⁰⁾하고, 각각의 목적에 맞게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그 중 기본경비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 인 소규모 운영경비로서 기관 전체 및 각 부서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기본행정경비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집행함.

< 예산안 편성지침의 기본경비 예시 >

구 분	내 용
① 기본행정경비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정상적 경비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단시간 근로자 포함) 인건비, 일용임금 ○ 사무용품 구입·복사·인쇄 책자발간, 간행물 구입 등 ○ 전화사용료, 유선방송 수신경비 등 공공요금 ○ 특근근무자 매식비 ○ 일·숙직비, 강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등 ○ 행사차량, 해외주재공무원 주택임차료 등

10)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은 인건비는 세부사업 코드 100~199, 기본경비는 세부사업 코드 200~299, 주요사업비는 세부사업 코드 300~799를 부여하여 구분함.

구 분	내 용
	○ 사무실 유지·보수공사비, 전기·통신시설 보수비 등 ○ 기관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재료비 등(예 : 검사용 시약) ○ 업무출장, 직무교육 여비 등 ○ 실무공무원 해외연수, 해외파견 공무원 여비, 국제회의 참석여비 등 ○ 업무추진비(관서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동호회 지원 등 ○ 맞춤형 복지 경비 ○ 기본 연구용역비 ○ 업무유공 격려 및 신고자 포상, 피해보상금, 이달의 공무원 표창 등 ○ 업무용차량 구입(교체) 및 임차료, 차량유류비 및 수리비 등 ○ 자동차세, 보험료 등 ○ 사무용자산 구입(자산취득비)
	☐ 기준성 경비 ○ 과운영비, 직책수행경비 ○ 공무원 대상 급식비 등
	☐ 교육훈련 경비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료 ○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피복비, 특근매식비, 재료비 등 ○ 교육훈련여비 ○ 업무추진비(관서업무추진비) ○ 자산취득비 등
② 소규모 전산 운영 경비	☐ 업무전산화 관련 기관운영 기본경비 ○ 전산용 소모품 구입비 ○ 주전산기 및 서버 임차료 ○ 전산시설 장비유지비 ○ PC 등 소규모 전산장비 구입비 ○ 전산운영요원 특근매식비 ○ 정보화사업 평가위원 수당 등 ○ 전산 전문교육 여비 및 지도점검 여비
③ 사회복지무요원 운영비	☐ 사회복지무요원 인건비 등 ○ 사회복지무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피복비, 교통비 등

☐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예산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경상경비적 예산이 아니고, 부패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비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예산은 기본경비가 아닌 주요사업비로 전환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보임.

- 공익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신고, 부패신고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의 경우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예산이 각각 관련 주요사업비에 편성되어 있음.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 (1111-250)	8 (35만원×23회)	8 (35만원×23회)
신고자보호보상 및 공익신고제도운영 등 (1136 - 364)	13 (35만원×36회)	14 (35만원×40회)
공직자행동강령운영 (1136-361)	4 (40만원×10회)	4 (40만원×10회)
공공재정 환수제도운영 (1136-366)	7 (35만원×20회)	7 (35만원×20회)
청탁금지제도운영 (1136-367)	8 (40만원×20회)	8 (40만원×20회)
합 계	32	33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 세출예산은 편성한 목적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원칙¹¹⁾이며 편성의 목적은 사업에 따라 구분하는 큰 틀 아래에서, 기본경비는 일상적·반복적 경상경비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목적을 제한하지 않

11)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되 주요사업비와는 별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요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기본경비로 편성·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료 관련 예산이 5개 세부사업에 나누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연도별 자문 소요의 편차에 따라 사업별로 예산 부족 또는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제도 확대 적용 및 활성화 노력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 할 수 있음.

< 비실명 대리신고 예산 및 집행현황 >

(단위: 천 원)

구분	공익신고 (신고자보호보 상및공익신고 제도운영)		부패신고 (기관운영기본 경비(비대상))		부정청탁 (청탁금지 제도운영)		행동강령위반 (공직자행동 강령운영)		공공재정 (공공재정환수 제도운영)	
	예산	집행 (%)	예산	집행 (%)	예산	집행 (%)	예산	집행 (%)	예산	집행 (%)
2019	-	1,950 (-)	-	-	-	-	-	-	-	-
2020	7,000	7,700 (110.0)	-	-	-	-	-	-	-	-
2021	8,200	15,450 (188.4)	-	-	-	-	-	-	-	-
2022	12,600	14,900 (118.3)	-	500 (-)	-	1,250 (-)	-	750 (-)	-	-
2023	12,600	12,050 (95.6)	8,050	3,550 (44.1)	8,000	3,400 (42.5)	4,000	3,100 (77.5)	7,000	1,000 (14.3)
2024.9	12,600	7,350 (58.3)	8,050	4,450 (55.3)	8,000	2,850 (35.6)	4,000	3,250 (81.3)	7,000	2,700 (38.5)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각 세부사업에 나누어 편성하던 신고자 보·포상금을 2025년 예산안부터 ‘신고자보호보상 및 공익신고제도운영 등’ 세부사업에 통합 편성¹²⁾한 취지를 감안할 때,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용을 위한 예산도 일원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 운용의 적합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관운영기본경비(비대상)에 편성된 부패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수당 예산을 주요사업비로 편성·집행하고, 각 세부사업에 편성된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예산을 통합하는 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12) 부패신고 보상금 예산 부족으로 매년 자체 전용이 발생함에 따라 부패신고자 보·포상금, 공익신고자 보·포상금,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 보·포상금,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포상금,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포상금을 일원화하여 편성하였음.

2.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관련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은 대·내외 정보통신 환경 변화와 새로운 정보화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정보시스템구축, 정보 자원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사이버 보안강화로 국민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¹³⁾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6억 7,200만원(△65.6%)이 감액된 77억원이 편성됨.

○ 동 세부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부의 모든 행정심판 서비스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통합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8억 9,700만원(△84.0%) 감소한 19억 8,8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2025년도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 감 (B-A)	(B-A)/A
행정정보시스템운영	5,376	22,372	7,700	△14,672	△65.6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370	16,885	1,988	△14,897	△84.0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13) 세부사업: 행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1132 - 320)

□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은 행정심판에 소요되는 모든 서류를 전자문서화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절차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토털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으로, 사전계획(2023년) 수립 후 3개년(2024~2026년)에 걸쳐 추진되고 있음.

< 추진 일정 >

단계	연도	주요 내용
1단계 기반구축	2024	• 원스톱 행정심판 대국민 홈페이지 구축 • 데이터 기반 스마트 업무처리 통합 플랫폼 구축 • 재결데이터 통합 공개관리시스템 구축 • 사용자 간편·상세 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 메타버스 행정심판 체험·홍보관 디자인 개선
2단계 고도화	2025	• 국민중심 디지털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및 분석체계 마련 - 다국어 지원 홈페이지 및 비대면 구술심리시스템 구축 - 통합행정심판 정보분석 및 선순환 시스템 구축 • 무중단 서비스 제공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장애예방과 개인정보유출방지·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개발·(단위·통합)테스트·취약점점검·운영배포 등 응용SW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3단계 자동화	2026~	• 원스톱 행정심판 자동화 시스템 구축 - AI 기반 24시간 365일 온라인상담 및 청구서·답변서 등 행정심판 문서 자동완성, 행정심판 재결결과 예측 등을 위한 sLLM 모델 개발 및 서비스 구축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심판 디지털플랫폼 개념도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동 사업의 2024년 및 2025년 주요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세부내역	2024예산	2025예산안	증감
■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16,885	1,988	△14,897
- 응용SW 개발	13,867 1식 × 13,867백만	1,169 1식 × 1,169백만	△12,698
- 상용SW 개발	1,319 1식 × 1,319백만	718 1식(7종) × 718백만	△601
- 감리	1,699 1식 × 1,699백만	101 1식 × 101백만	△1,59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나. 검토의견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의 최초 취지는 분산된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로 통일하고, 개별 시스템마다 별도의 유지·관리 인력과 예산 투입을 방지하려는 것이었으나, 총 123개 기관 중 93개 기관만이 통합에 동의한 상황으로 당초 취지 달성에 어려움이 있음.

당초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25개 미동의 심판기관의 이용 동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끌어내고, 통합제외 5개 기관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9월 2024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권익위는 총 123개 기관 중 4개 기관을 제외한 119개 행정심판기관을 통합가능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고 기관의 동의를 전제로 통합시스템 이용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2024년 9월에는 2023년에 밝힌 119개 기관보다 1개 줄어든 118개 행정심판기관의 동의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이마저도 118개 기관 중 25개 기관은 아직 동의를 받지 못하여 2024년 9월 기준 93개 기관만을 대상으로 통합을 준비 중임.

<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미통합 기관 현황 및 사유 >

연번	구분	기관명	사유
1	일반	감사원	헌법기관(독립적 운영 필요)
2		국가정보원	국가안보 관련 정보수집과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특성상 국가정보원 조직·인원 등 관련된 사항의 외부 노출 제한
3		대통령비서실	시스템 개통 시 검토
4		국가안보실	
5		대통령경호처	
6		국회사무처	공문 미회신
7		법원행정처	공문 미회신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문 미회신
9	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원처분시스템(근로복지공단)과 연계 어려움 등의 사유로 통합시스템 사용보다는 현행 자체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
10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미회신
11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미회신
12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신청(원처분 내역 연계 제공)하는 경우 대비 청구인의 편의성 감소, 추후 통합시스템 기능이 보다 명확해 진 후 재검토 하겠음
13	소청	중앙 소청심사위원회	공문 미회신
14		국회 소청심사위원회	공문 미회신
15		법원 소청심사위원회	공문 미회신
16		헌재 소청심사위원회	헌법기관(독립적 운영 필요)
17		선관위 소청심사위원회	공문 미회신
18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군에서 운용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전국 각지에 있고, 무기·방호장비·군사 보안 등으로 통합시스템 이용 부적절
19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20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21		공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22		해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23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 사유로 조직통합 및 시스템통합 반대
24	토지등	중앙토지수용위원회(부담금)	공문 미회신
25		광업조정위원회	공문 미회신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당초 동 사업의 취지는 ① 분산된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로 통일하고, ② 개별 시스템마다 별도의 유지·관리 인력과 예산 투입을 방지하는 것이었음.

☐ ① ‘분산된 서비스를 하나의 창구로 통일’하는 것과 관련하여 권익위는 미동의 기관과 특수성이 인정되는 ‘특허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정거래위, 중앙노동위, 난민위 등 5개 기관’은 링크를 통해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임.

< 2024.10월 기준 통합 방식 계획 >

유형	대상	통합 방식
통합형	123개 행정심판 중 118개	통합 시스템에서 모든 서비스를 통합 제공
연계형 (링크)	특허심판원 등 통합제외 5개	통합 시스템에서는 각 사이트의 개요만 제공하고, 추가 절차는 링크를 통해 개별사이트로 이동하여 진행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또한, ② ‘개별 시스템마다 별도의 유지·관리 인력과 예산 투입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현재 동의 기관이 93개이고, 5개 기관은 별도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당초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

해 25개 미동의 심판기관의 이용 동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
에 이끌어내고, 통합제외 5개 기관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 반부패기술지원(ODA): 수원국 다양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반부패기술지원(ODA)’은 우리나라의 주요 반부패 정책 및 제도 전수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인적·제도적 반부패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¹⁴⁾ 2025년 예산안은 전년과 같은 2억 9,8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반부패기술지원(ODA)’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반부패기술지원 (ODA)	151	298	298	-	-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나. 검토의견

다국가 대상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를 축소하고 카자흐스탄 부패방지 제도 개선 연수를 별도로 반영하였는데, 특정 국가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큰 비중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수원국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4) 세부사업: 반부패기술지원(ODA)(1133-331)

□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 반부패 교육 수요 증가 및 UN반부패협약¹⁵⁾ 이행 의무에 따라 2013년부터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과정’을 개설하며 시작된 사업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예산 중 유일한 ODA 사업임.

□ 최근연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에 기존의 영어과정 외에 러시아어 과정을 신설하여 러시아어권 국가로 사업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2024년에는 스페인어 과정을 신설하여 중남미 국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음.

< 최근연도 ‘반부패 기술지원(ODA)’ 사업 추진 현황 >

연도	추진 현황
2020	○ 제8차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실시(11월, 비대면) ○ 제1차 중앙아·동유럽 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실시(11월, 비대면) ○ 우즈베키스탄 대상 반부패 정책 연수 실시(12월, 비대면)
2021	○ 제2차 중앙아·동유럽 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실시(5월, 비대면) ○ 제9차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실시(10월, 비대면)
2022	○ 카자흐스탄 대상 반부패 정책 연수 실시(6월, 비대면) ○ 제3차 중앙아·동유럽 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실시(7월, 비대면) ○ 코스타리카·파라과이 대상 반부패 정책 연수 실시(10월, 세종/청주) ○ 제10차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실시(11월, 서울/세종/청주)

15) UN반부패협약은 타방 당사국의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이행 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8년 2월에 동 협약을 비준하면서 부패방지 전담기구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지정함.

연도	추진 현황
2023	○ 제1차 아프리카 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실시(3월, 비대면) ○ 스리랑카 대상 반부패 정책 연수 실시(5월, 청주) ○ 키르기스스탄 대상 반부패 정책 연수 실시(6월, 청주) ○ 제11차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실시(9월, 서울/세종/청주)
2024	○ 제12차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실시(4월, 청주/세종/서울) ○ 제4차 중앙아·동유럽 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실시(6월, 청주/세종/서울) ○ 제4차 중남미 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실시(9월, 청주/세종/서울)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그런데, 이 사업의 2025년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에 따르면, 전체 편성규모는 2024년 예산과 동일하나 2025년에는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를 전년도 3회에서 2회로 축소하고 카자흐스탄 부패방지 제도개선 연수를 별도로 반영함.

○ ‘카자흐스탄 부패방지 제도개선 연수’는 고위급, 실무급 초청연수로 나누어 실시하고 현지 세미나까지 계획함에 따라, 단일국가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의 41.9%에 달하는 1억 2,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됨.

< ‘반부패기술지원(ODA)’ 예산안 세부 편성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1차	84	84
	2차	89	89
	3차	125	-
	소계	298	173
카자흐스탄 부패방지 제도개선연수	고위급 초청연수	-	48
	실무급 초청연수	-	56
	현지 세미나	-	21
	소계		125
합 계		298	298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는 카자흐스탄 부패방지 제도개선 연수를 추진한 사유에 대하여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반부패 제도 전수에 대한 수원국의 의지와 수요가 높고, 우리나라의 중앙아 최대 교역국·투자대상국으로서 부패수준 개선 필요성이 높아 '22년 비대면 연수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카자흐스탄 대상 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 그러나,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특정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큰 비중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첫째, ‘카자흐스탄 부패방지 제도개선 연수’ 신설로 인해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예산을 전년에 비해 1억 2,500만원 축소함에 따라, 러시아어 과정과 2024년에 신설된 스페인어 과정 초청 연수가 미 실시되고 2개 언어 과정¹⁶⁾ 연수만 실시될 예정인데, 이는 다양한 언어권 국가로 사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기존 정책 추진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2024년 ‘반부패기술지원(ODA)’ 사업 진행내역 >

과정명	대상국	직급 및 인원	시기	주요 프로그램	집행액 (백만원)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영어과정, 초청연수)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 아태·아프리카 5개국	실무급 14명	4.15 ~ 4.24	반부패 전략수립, 청렴도평가, 부패 사건 수사기법 등	76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러시아어과정, 초청연수)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동유럽 3개국	실무급 및 고위급 15명	6.10 ~ 6.19	부패영향평가, 부패사건 수사, 디지털 부패방지 시스템 등	76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스페인어과정, 초청연수)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중남미 4개국	실무급 및 고위급 15명	9.3 ~ 9.11	부패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계약 부패방지 등	13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16) 2025년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는 영어과정(84백만원), 아랍어과정(89백만원) 2개 언어 과정 예산이 편성됨,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p.94.)

○ 국민권익위원회는 본 세부사업에 대한 ODA 사업보고서¹⁷⁾에서 영어 및 러시아어 과정 외에 불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권의 연수과정을 개설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 바 있음.

□ 둘째, 국민권익위원회가 수립한 사업 추진 체계¹⁸⁾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1~'25)의 ODA 중점협력국(27개국) 및 반부패 MOU체결국(9개국)을 우선 지원해 왔는데, 2025년 예산안의 42%를 책정한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ODA 중점협력국(27개국) >

지 역	국 가 명
아시아(12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
아프리카(7개국)	가나,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이집트
중동·CIS(4개국)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중남미(4개국)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 공공행정 중점협력국(11개국) :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몽골, 미얀마,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페루, 파라과이

17)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비대면교육) 종료평가 보고서(2023.1.) 20p

18)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비대면교육) 종료평가 보고서(2023.1.) p.6.

< 반부패 MOU 체결국(9개국) >

인도네시아(2006), 몽골(2010), 베트남(2010), 튀니지(2018), 이라크(2018),
미얀마(2018), 카타르(2018), 쿠웨이트(2019), 우즈베키스탄(2019)

□ 셋째,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동 사업에 대해 “초청 국가가 단기간 내에 중복되는 것은 사업의 효과가 일부 국가에 한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원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¹⁹⁾을 지적했었는데,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는 2022년에도 이미 실무급 및 고위급 44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정책연수를 실시한 바 있음.

< 2022년 ‘반부패기술지원(ODA)’ 사업 진행내역 >

과정명	대상국	직급 및 인원	시기	주요 프로그램	집행액 (백만원)
카자흐스탄 반부패 정책연수 (온라인)	카자흐스탄	실무급 및 고위급 44명	6.7 ~ 6.9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민간부문 부패방지 등	16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러시아어과정, 온라인)	몽골, 몰도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동유럽 4개국	실무급 36명	7.12 ~ 7.14	한국의 반부패 법령과 제도, 청렴도평가, 부패 수사 등	14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반부패 정책연수 (초청연수)	코스타리카, 파라과이	실무급 및 고위급 10명	10.17 ~ 10.21	신고자보호, 청렴포털 시스템, 청렴교육 프로그램 등	62

19)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과정명	대상국	직급 및 인원	시기	주요 프로그램	집행액 (백만원)
다국가 반부패 역량강화 연수 (영어과정, 초청연수)	네팔, 라오스, 르완다, 베트남,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등 아태·아프리카 7개국	실무급 13명	11.14 ~ 11.23	반부패 전략수립, 청렴도평가, 부패영향평가, 뇌물방지 국제동향 등	69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따라서, ‘반부패기술지원(ODA)’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큰 비중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검토하는 한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수원국의 다양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4. 고충민원조사활동: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 사업의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재검토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고충민원조사활동’의 내역사업인 ‘특별민원 중점관리’ 사업은 특별(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상담요원 운영 및 일선 민원처리 공무원 대상 워크숍·교육 실시 등을 하기 위하여 2025년도에 신규 추진되는 사업으로,²⁰⁾ 2025년 예산안은 1억 4,5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고충민원조사활동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고충민원조사활동	1,315	1,324	1,680	356	26.9
특별민원 중점관리	-	-	145	145	-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나. 검토의견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 사업은 2025년도에 신규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운영 방안 등 사업 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20) 세부사업: 고충민원조사활동(1135-350)

□ ‘특별민원 중점관리’ 내역사업은 특별(악성)민원²¹⁾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및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 총괄기관으로서 특별민원의 중점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5년도에 신규 추진되는 사업임.

< ‘24년 권익위 특별민원 실태조사 결과 >

구분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악성민원인 수		1,124명	192명	1,372명	96명
유형별 비중	상습 반복	76%	63%	56%	47%
	폭언·폭행	17%	21%	30%	32%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동 내역사업은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 사업, ‘특별민원 대응을 위한 워크숍·역량강화 교육·컨설팅’ 사업, ‘특별민원 피해현황 실태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도 특별민원 중점관리 사업 예산안 >

구분	금액	비고
특별민원 중점관리	1억 4,500만원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	5,000만원	상담요원 10명×20건
특별민원 대응을 위한 워크숍·역량강화 교육·컨설팅	4,500만원	임차료, 일반수용비(물품, 책자)
특별민원 피해현황 실태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5,000만원	정책연구용역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1)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민원을 폭언, 축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행위로 규정하고, 각 유형을 세분화하여 분류하고 있음.

*(예시) 위법행위는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협박 등으로, 공무방해행위는 반복형 시간 구속형, 부당한 요구 등으로 분류함.

□ 이 중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 내내역사업은 타 기관에서 특별민원 상담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요청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담요원을 배치하고, 상담요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상담·설득·대안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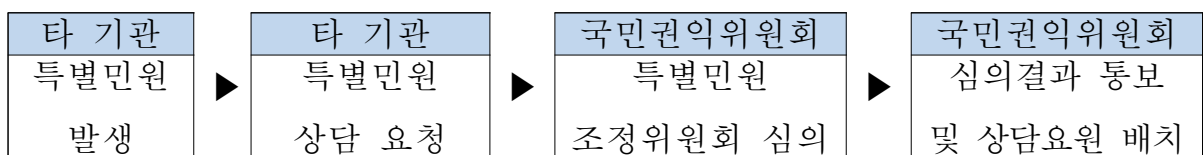
○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특별상담요원의 역할은 설득·관련 법령 설명 등 민원인 상담이고, 각 상담요원은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 분야 전문가와 민원처리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퇴직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예정이라고 함.

<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방안 >

- (개요) 특별민원 상담요원은 특별민원 특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상담·관리를 통해 설득·대안 제시등을 수행
-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안)
 - (요청) 타 기관에서 특별민원 상담을 위원회로 요청하고, 심의를 거쳐 결과 통보 및 상담요원 배치
 - (상담) 고충처리국 민원과장 또는 팀장의 지휘를 받아, 상담요원이 특별민원인을 상담하고 설득·대안 제시 등 수행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 절차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그런데,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 사업의 사업계획 및 운영방안 등을 살펴보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집행 전 단계에서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사업계획상 상담요원의 업무는 특별민원인에 대한 민원 상담 등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등은 행정사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행정사법」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²²⁾ 이를 고려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상담요원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방안을 살펴보면, 상담요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고충처리국 민원과장 또는 팀장)의 지휘를 받아 특별민원인을 상담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상담요원을 지휘·관리하게 된다면, 상담요원과 국

22)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업으로 한 자

민권익위원회가 고용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고,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상담요원의 사용자로서 상담요원의 민원 상담 및 처리 업무에 관한 최종 책임의 귀속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상담요원과의 업무 관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담요원에 대한 수당을 일반수용비(210-01목)로 편성하고 있는데, 상담요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지휘·관리한다면 업무 위탁 또는 대행보다는 민원행정 보조의 성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므로, 비목에 부합하는 운영방안의 재설계 또는 일용임금(110-04목)으로 해당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편성지침상 일반수용비, 일용임금 구분 >

구분	210-01목(일반수용비)	기타비목에 계상	일반수용비 편성사례
소규모 업무대행에 대한 대가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수수료, 사용료 및 전문가 자문료 ·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 계약 또는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는 110-04목(일용임금)에 계상	· 국가소송, 행정쟁송 및 법률자문 대비변호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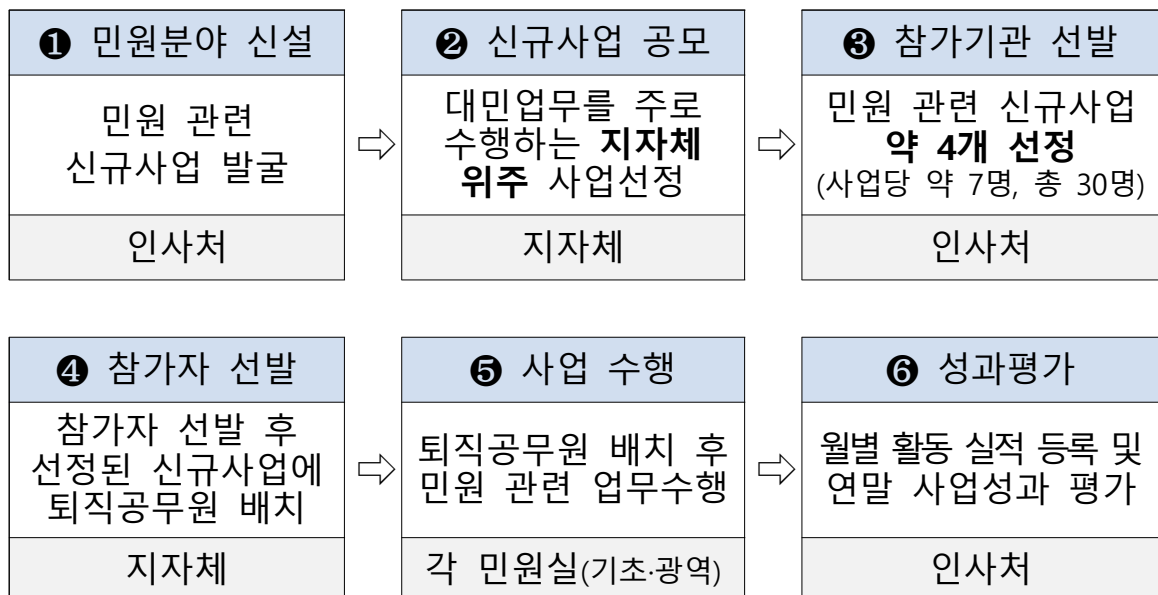
자료: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20

- 셋째, 인사혁신처도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특별민원 대응과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 사업 시행 전 각 기관이

계획하는 사업의 범위 등을 충분히 협의함으로써,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어 추진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륜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과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퇴직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운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악성민원 대응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지자체 위주로 4개의 세부사업을 신규 선정하여 30명의 퇴직공무원을 배치하여 민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임.

< 인사혁신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민원분야 확대 계획 >



자료: 인사혁신처

□ ‘특별민원 상담요원 운영’ 사업은 2025년도에 신규 추진되는 사

업이라는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운영방안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외부기관 국외여비 지원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 진단, 반부패·청렴시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각급기관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하는 사업으로,²³⁾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700만원(△2.2%) 감소한 29억 9,9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청렴도측정 및 부패영향평가	2,543	3,066	2,999	△67	△2.2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나. 검토의견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담당자의 국외교육 참여 지원을 위해 국외여비를 편성하였는데, 청렴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국외여비 지원이 평가대상 기관의 청렴도 제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므로, 편성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3) 세부사업: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1136-360)

□ 이 사업의 세부 편성내역에 따르면, ‘기관협의 및 운영 등을 위한 경비’ 내역사업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2,100만원 증가한 1억 5,900만원으로, 이 중 국외업무여비는 전년 대비 2,400만원 (200%) 증가한 3,600만원임.

<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계획안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증감액
공공기관 등의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2,828	2,735	△93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58	45	△13
청렴컨설팅 운영	42	60	18
기관협의 및 운영 등을 위한 경비	138	159	21
(국외업무여비)	(12)	(36)	(24)
합계	4,952	4,865	△67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동 내역사업의 국외업무여비는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대상 국외 반부패 교육훈련을 인솔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의 여비 목적으로 편성되어 왔는데, 2025년 예산안은 우수기관 측 참가인력 일부에 대한 여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액되었음.

○ 그동안 교육기관 위탁훈련 경비²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담하고

참가자 여비는 참여기관이 자체 부담하였는데, 2025년 예산안은 참여기관 중 일부(약 20개 기관 중 5개 기관)에 대해 항공료, 체재비 등 국외여비까지 지원할 목적으로 증액 편성함.

<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대상 국외 반부패 교육훈련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집행대상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반부패 교육훈련 교육비 (일반수용비)	우수기관 직원	20 (80만원×25명)	20 (80만원×25명)
반부패 교육훈련 여비 (국외업무여비)	권익위 인솔직원	12 (400만원×3명)	13.5 (450만원×3명)
	우수기관 직원	-	22.5 (450만원×5명)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렴 역량 견인을 위해 종합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외 반부패 교육훈련을 실시 중인데, 대상기관의 예산 미확보로 불참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우수기관에 대한 보다 강력한 유인 제공을 위해 국외 교육훈련 지원방식을 개선하였다고 밝힘.²⁵⁾

□ 그런데, 이와 같이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담당자 대상 국외 교육훈련 참가가 부진하다고 하여 대상 인원의 항공료, 체재비까지

24)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국제 반부패 아카데미 참석을 목적으로, 교육기관 위탁훈련 경비를 1인당 80만원씩 25명에 대해 2,000만원을 편성함(일반수용비)

25)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p.190.)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권익위는 예산 편성의 목적을 ‘우수기관에 대한 보다 강력한 유인 제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청렴도 평가 상위 기관의 청렴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국외 단기교육 여비 지원이 평가대상 기관의 청렴도 제고 유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

□ 그리고 2025년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르면, 국외업무여비(220-02)는 가급적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제한적으로 편성·지출할 것을 방침으로 삼고 있는데, 종합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담당자에 대한 포상 성격의 국외여비 지원이 불가피한 지출소요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지침(p.238~239)>

- 국외여비 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4년 예산 범위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는 만큼을 요구
- 과거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국외여비는 삭감하고 현안타결을 위한 해외출장 위주로 편성

□ 한편, 2024년 실시한 국외 반부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사기범죄 예방 도구 및 개념’, ‘유엔마약범죄사무소 견학’, ‘경제범죄경찰청 견학’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각 기관의 청렴업무 실무자에게 유용할 것인지, 청렴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해당 프로그램 구성의 적합성 및 실효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2024년 국외 반부패 교육훈련 프로그램 >

연번	프로그램명(주요내용)	이수 시간
1	International Efforts to Curb Corruption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반부패 관련 국제 협약, 국가별 부패방지 제도 소개)	4:30
2	Anti-Corruption Compliance 부패방지 규정 (부패 예방을 위해 국가, 기업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소개)	
3	Corruption Risk Analysis 부패위험 분석 (부패 관련 위험성 분석의 방법론 제시)	3:30
4	Corruption Risk Analysis Case Studies 부패위험 분석 사례연구 (주요 국가의 부패 예방을 위한 관리 도구 사례 연구)	
5	Organizational Integrity (I) 기관 청렴도 (I) (기관 청렴도 관리의 개념 소개)	3:30
6	Organizational Integrity (II) 기관 청렴도 (II) (청렴도 관리를 위한 규제적, 행동적 접근방법 탐구)	
7	Study Visit to UNODC/Vienna International Center(VIC) 유엔마약범죄사무소/비엔나 국제센터 견학	3:30

연번	프로그램명(주요내용)	이수 시간
8	Corruption and Electronic Evidence : A Primer for Non-technicians (I) 부패 및 전자적 증거 : 비전문가 대상 기초 (I) (포렌식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전자적 증거 수집 방법 소개)	3:30
9	Corruption and Electronic Evidence : A Primer for Non-technicians (II) 부패 및 전자적 증거 : 비전문가 대상 기초 (II) (부패사건의 전자적 증거 수집 관련 이슈, 시사점)	
10	Study Visit WKStA - Prosecutor's Office for White Collar Crime 경제범죄경찰청(주요 경제 및 부패범죄 수사 전문조직) 견학	3:30
11	Fraud Prevention Tools and Concepts (I) 사기범죄 예방 도구 및 개념 (I) (사기의 개념 및 구성요소 소개)	4:00
12	Fraud Prevention Tools and Concepts (II) 사기범죄 예방 도구 및 개념 (II) (조직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청렴도측정및부패영향평가’ 사업 예산안 중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직원 국외교육 참여 지원을 위해 증액한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편성 필요성 및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6.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일반용역비 예산 증액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청렴교육및의식확산’은 청렴교육과정 및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반부패 청렴사례 공모전 및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등을 기획·시행하는 사업으로,²⁶⁾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8,900만원(8.4%) 증가한 24억 2,8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청렴교육및의식확산	2,064	2,239	2,428	189	8.4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나. 검토의견

2030세대의 수요에 맞는 특화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심화된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반용역비를 증액하였는데, ‘초등학생 청렴캠프 운영’은 일반용역비 증액 사유에 부합하지 않으며 예산 배분의 효율성 및 사업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편성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26) 세부사업: 청렴교육및의식확산(1136-361)

□ 이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은 청렴 문화 확산 및 의식 고취를 위해 일반 국민, 미래세대 대상의 청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0만원(0.3%) 증가한 3억 8,500만원이 반영되었음.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일반용역비(210-14목)가 전년도 5,000만원의 2배 이상인 1억 1,000만원 편성됨.

< 2025년도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내역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증감	비고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개발·운영	384	385	1	
· 교육보조원 운영	39	40	1	
· 청렴교육운영비	67	67	-	
· 교육기관 업무협약	5	5	-	
· 교육콘텐츠 개발	120	60	△60	
· 초·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청렴교육 위탁 운영	103	103	-	120만원×85개교
·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50	110	60	미래세대 대상 교육운영 확대 (1식→2식)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이와 같이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목적의 일반용역비를 대폭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에는 2030세대의 수요에 맞는 특화과정으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토론경연대회 등 심화된 교육과정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반용역비를 증액하였다고 밝힘.
- 그런데, 2025년 예산의 구체적 산출근거와 최근의 집행현황 등을 살펴보면 일반용역비 증액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합리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첫째,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일반용역비 1억 1,000만원의 산출근거로 기존 사업인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위탁운영’(6,000만원)과 신규 사업인 ‘초등학생 청렴캠프 운영’(5,000만원)에 대한 2건의 산출내역서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초등학생 청렴캠프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증액 사유인 ‘2030세대의 수요에 맞는 특화과정’, ‘토론경연대회 등 심화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보기 어려움.
- 둘째, 신규로 추진하는 ‘초등학생 청렴캠프 운영’에 대한 필요성 및 구체적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며, 산출내역서 상의 사업운영 구상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도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초등학생 60명이 2박 3일간(2회) 청림과 관련된 역사문화유적지를 탐방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의 일정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60명 정도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캠프를 진행하는 사업의 효과성이 충분히 있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됨.
-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본 내역사업의 다른 세부 편성내역인 ‘초·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청림교육 위탁 운영(1억 300만원)’을 통해 매년 약 85개교, 10,200명²⁷⁾을 대상으로 체험형 청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소수 초등학생 대상의 캠프 운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10,200명 대상 사업에 1억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초·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청림교육 위탁 운영’)하면서 60명 대상사업에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초등학생 청림캠프 운영’)하는 것을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라 볼 수 있는지, ‘초등학생 청림캠프 운영’ 사업이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업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27) 2024년 ‘학생 대상 청림교육 위탁 운영’ 제안요청서 기준

< ‘초등학생 청렴캠프 운영’ 예산안 산출내역서 >

항목		구분	세부업무	인원/개수	일수/수량	단가(원)	금액(원)
인건비	기획	PM	사업 총괄	1	22	3,622,585	3,622,585
		파트장	현장학습 설계 및 기획 총괄	1	22	2,777,750	2,777,750
		책임	자료조사, 현지답사, 장소섭외 등	1	22	1,392,671	1,392,671
		책임	인력섭외 및 스케줄관리	1	22	1,392,671	1,392,671
	운영	파트장	운영 총괄	1	22	2,777,750	2,777,750
		책임	현장 운영인력	1	22	1,392,671	1,392,671
		책임	현장 안전인력	1	22	1,392,671	1,392,671
	인건비 소계						14,748,769
경비	대여료	숙박	호텔 등	15실	60실(4박)	100,000	6,000,000
		교통	대형버스 등	2대	12대(6일)	800,000	9,600,000
	운영비	식대	식사	30명	540식 (18끼)	15,000	8,100,000
		간식비	간식, 음료 등	30명	180식(6일)	5,000	900,000
		예비비	입장료, 체험실습비 등	30명	60회(2회)	10,000	600,000
	경비 소계						25,200,000
합계						39,948,769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5%	1,997,438
이윤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8%	3,355,697
부가가치세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10%	4,530,190
조 정 금 액		-167,906
총 계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조정금액)	50,000,0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셋째,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연도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일반용역비 예산을 편성 금액과 달리 임의로 확대 집행하고 있어, 이러한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허용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일반용역비는 2024년 예산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24년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사업예산을 6,500만원으로 임의 확대하여 발주하였고 경쟁입찰 결과 5,850만원에 계약을 체결함.
- 동 일반용역비의 2023년 예산 역시 5,000만원이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2030 청렴인재 아카데미’ 용역을 5,000만원에 발주하여 4,642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 정산내역서에 따르면 정산금액은 5,493만원이었음.

< 최근연도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집행 현황 >

(단위: 천 원)

연도	예산액	사업 발주 시 제시한 사업예산	계약금액	정산금액
2023	50,000	50,000	46,420	54,934
2024	50,000	65,000	58,500	-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따라서, ‘청렴교육및의식확산’ 세부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일반용역비 증액(5,000만원→1억 1,000만원)이 적절한지에 대해 면밀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 행정심판운영: 행정심판통합시스템 관련 홍보비 청렴 권익정책알리기 사업으로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행정심판운영’의 내역사업인 ‘행정심판통합추진’ 사업은 일반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통합 등을 통하여 국민편의 중심의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으로,²⁸⁾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4,000만원이 증가(194.4%)한 2억 1,2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행정심판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행정심판운영	1,094	1,177	1,543	366	31.1
행정심판통합추진	-	72	212	140	194.4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나. 검토의견

행정심판통합에 관한 대국민 홍보비는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홍보 사업인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으로 이관하여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음.

28) 세부사업: 행정심판운영(1137-370)

- ‘행정심판통합추진’의 내내역사업인 ‘대국민 홍보비’ 사업은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등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으로, 광고(뉴미디어, 옥외) 1억 1,400만원, 홍보물 제작 2,000만원 등으로 구성됨.

< 2025년도 대국민 홍보비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대국민 홍보비	140	
SNS이벤트	6	3매체, 4회
홍보물 제작	20	2종 제작
뉴미디어 광고	58	크리에이터 협력, SNS 게시물 홍보
옥외 광고	56	4매체, 1회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 고충민원 등 위원회의 주요 기능과 정책에 대하여 TV, 라디오, 옥외 광고, 뉴미디어 등을 통하여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렴권익정책 알리기’ 사업²⁹⁾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있음.
- 동 세부사업 내에도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홍보 예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2년 2건, 2023년 2건, 2024년 1건의 행정심판 제도에 관한 홍보사업을 수행한 바 있음.

29) 세부사업: 청렴권익정책알리기(1131-300)

< 2025년도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 내 행정심판 홍보 예산안 >

구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안	증감	비고
권익증진 정책홍보	619	439	△180	
행정심판 제도 홍보	20	19	△1	
홍보물 제작	141	113	△28	
디지털소통팀 운영	952	756	△196	
행정심판 제도 홍보	34	32	△2	
온라인 소통창구 강화	39	39	-	
SNS 이벤트	15	15	-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최근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 내 행정심판 홍보 집행 내용 >

연도	광고내용	광고매체
2022년	행정심판제도 소개·홍보	유튜브, 옥외광고(지하철)
	행정심판법·제도 포털 홍보	네이버
2023년	행정심판제도 소개·홍보	인스타그램, 옥외광고(KTX)
	행정심판 온라인 캠페인	네이버
2024년	행정심판제도 인지도 제고 광고(11월 예정)	유튜브, 인스타그램, 옥외광고(KTX)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상을 살펴보면, ‘행정심판운영’ 사업 내 홍보사업인 ‘대국민 홍보비’는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 내 행정심판 제도 홍보사업과

홍보의 대상, 광고매체, 홍보 방식 등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대국민 홍보비’를 개별 사업에 별도로 편성함으로써, 홍보사업을 분리·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또한, 개별 사업부서에서 홍보 예산을 집행하게 된다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고,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운영하고, SNS 이벤트, 뉴미디어 매체 등을 통해 홍보를 수행해 온 경험을 가진 대변인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과거 국회 결산심사³⁰⁾에서도 개별사업 예산을 홍보비로 집행하는 것은 홍보사업 전담부서인 대변인실과의 협의를 사전에 거치지 않게 되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 내 행정심판 제도 홍보 예산은 행정심판 제도 소개 및 절차·해결 사례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고, 행정심판통합 추진 관련 홍보 예산은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의 개통 안내 및 행정심판 통합 추진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자는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임.

○ 그러나, 과거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으로 수행된 행정심판 제

30) 2018회계연도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사, 2019년 정무위원회 결산심사

도 홍보에도 행정심판 포털에 대한 홍보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 내 홍보 방식으로 행정심판 통합 추진의 필요성에 관한 홍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입장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초 예산(안) 확정 이후 각 사업부서의 홍보계획 등 의견을 취합하여 위원회 전체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홍보 내용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위 절차에서 개별 사업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심판 운영’(1137-370) 사업 내 일반수용비로 편성된 ‘대국민 홍보비’ 예산안 1억 4,000만원은 국민권익위원회 홍보 사업인 ‘청렴권익정책알리기’(1131-300) 사업으로 이관하여, 홍보 사업을 통합 운영하게 할 필요가 있음.

8. 행정심판운영: 국선대리인 제도 활성화 위한 심사강도 완화 및 홍보 강화 필요

가. 사업 및 예산안 개요

□ ‘행정심판운영’의 내역사업인 ‘행정심판운영지원’ 사업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상임위원 활동 수당, 국선대리인 사례비, 자문료 등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³¹⁾ 2025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1,400만원이 증가(30.2%)한 9억 2,200만원이 편성됨.

< 2025년도 행정심판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 (B-A)	(B-A)/A
행정심판운영	1,094	1,177	1,543	366	31.1
행정심판운영지원	703	708	922	214	30.2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나. 검토의견

국선대리인 제도는 신청 요건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바,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처분 당사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국선대리인 신청에 대한 심사 강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1) 세부사업: 행정심판운영(1137-370)

□ 국선대리인 제도는 2018년 11월 도입된 것으로,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약자의 실질적 권익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선대리인 사례비’ 사업은 선임된 국선대리인에게 사례비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5는 국선대리인의 보수를 사건 1건당 5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실제 국민권익위원회는 사건 1건당 평균 30만원을 지급되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국선대리인 선정 요건을 완화하였으며,³²⁾ 이에 따라 국선대리인 선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여 동 사업의 2024년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2025년도 예산안도 전년과 동일한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동 사업의 집행실적은 오히려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연도별 국선대리인 사례비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계획건수	선정건수
2020년	34	32.8	96.5	85	136
2021년	61	43.4	71.1	152	165
2022년	61	54.4	89.2	152	149
2023년	61	33.3	54.6	152	102
2024년(9월 기준)	87	11.7	13.4	217	71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32) '21년 1월 소득기준 완화 (27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21년 5월 법인 지원대상 제외 →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영세법인까지 지원

□ 이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신청 건수는 증가하지 않은 반면, 국선대리인 선정률은 오히려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연도별 국선대리인 신청 및 선정 현황 >

(단위: 건, %)

구분	행정심판 접수건수 (A)	국선대리인 신청건수 (B)	국선대리인 신청률 (B/A)	국선대리인 선정건수 (C)	국선대리인 선정률 (C/B)
2020년	22,367	371	1.7	136	36.7
2021년	19,229	410	2.1	165	40.2
2022년	21,450	404	1.9	149	36.9
2023년	30,881	416	1.3	102	24.5
2024년 (9월 기준)	15,315	286	1.9	71	24.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한편, 2024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건을 그 사유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8건,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으로 인정된 경우 148건으로, 국선대리인 신청 당해사건을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국선 대리인 선정을 기각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24년 국선대리인 신청 기각 사유별 사건 현황 >

(‘24년 9월 기준)

사유 ³³⁾	미선정 건수	비고
법령상 선임 신청 요건을 결한 경우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68건	31.2%
심리기일 경과 후 신청한 경우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	-	-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8조의2제2항)	148건	68.8%
합계	216건	100%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자에 대한 권익구제를 강화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행정사건의 복잡화에 따른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증가 및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이 전체 인용률보다 높다는 점 등을

33) 「행정심판법」 제18조의2(국선대리인)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16조의2(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6.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개인) 소득기준 300만원 이하 (법인)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영세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인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고려할 때, 국민권익위원회는 동 사업의 집행실적을 개선하고, 국선 대리인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행정심판 사건 인용률 >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9월기준)
전체 사건 인용률(A)	8.6%	7.2%	5.8%
국선대리인 선정 사건 인용률(B)	22.7%	19.3%	14.5%
인용률 차이(B-A)	14.1%p	12.1%p	8.7%p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따라서 향후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점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신청 요건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선대리인 신청률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음.

- 관련하여 ‘청렴권익알리기’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행정심판제도 홍보에 국선대리인 제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해당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국선대리인 신청은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을 통지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국선대리인 제도도 고지할 필요가 있음.³⁴⁾

○ 둘째, 선정률 감소와 관련하여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에 대하여 사건의 규모, 사안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선임 여부를 결정하되,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상을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행정심판을 통하여 신속하게 권익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34) *현행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청구기간 등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